

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파주시에서 조성한 다목적운동장,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
- 사용자에게 대해 최소한의 관리비명목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체육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일반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권을 발급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함. (안 제4조)
- 나.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)
- 다.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체육회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함. (안 제14조)
- 라.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배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. (안 제17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조례안의 「위탁운영」 등의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제3항 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며, 또한 「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」에 있어서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 방 자 치 법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・檢査・檢定・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・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・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.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조례안 제3조의 2의 경우,
「3개월 이상」을 「일정기간」으로 바꾸고 그 일정기간을 규칙으로 정함과,
- 동 조례안 제5조의 경우,
「중복될 경우에」를 「2인(개 단체)이상 경합될 때에」로 바꾸는 것이 내용상 타당하다고 사료됨.